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9.14.(월)	2026.09.15.(화)	2026.09.16.(수)	2026.09.23.(수)	2026.09.30.(수)~ 2026.10.05.(월)	2026.10.07.(수)~ 2026.10.09.(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 37445호(2026. 09. 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공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공공규모: 지하 2층, 지상 22~33층 8개동 총 81세대 중 임대분양 41세대 제외한 일반분양 777세대

[특별공공 288세대(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75세대, 신혼부부 68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32세대, 신생아 4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2029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공대상 (단위: m², 세대)

■ 공급금액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 수	분양가격			총분양가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약시	계약약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7.02.10.	2027.08.09.	2028.01.10.	2028.06.08.	2028.11.08.	2029.03.08.	
84A	401동 1,2호	2층	12	197,370,000	342,630,000	-	540,000,000	10,000,000	17,8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402동 1,2,4호	3층	12	203,729,700	353,670,300	-	557,400,000	10,000,000	17,80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195,090,000
	404동 1,2호	4층	12	210,089,400	364,710,600	-	574,800,000	10,000,000	18,740,000	57,480,000	57,480,000	57,480,000	57,480,000	57,480,000	57,480,000	201,180,000
	405동 1,2호	5~9층	49	212,209,300	368,390,700	-	580,600,000	10,000,000	19,03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203,210,000
	406동 1,2호	10~19층	109	213,269,250	370,230,750	-	583,500,000	10,000,000	19,175,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204,225,000
	407동 1,3호	20층 이상	99	215,389,150	373,910,850	-	589,300,000	10,000,000	19,465,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206,265,000
84B	401동 2,3호	2층	7	192,399,200	334,000,800	-	526,400,000	10,000,000	16,40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184,240,000
	402동 2,3호	3층	7	198,612,700	344,787,300	-	543,400,000	10,000,000	17,17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190,190,000
	403동 2,3호	4층	7	204,826,200	355,573,800	-	560,400,000	10,000,000	18,02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196,140,000
	405동 2,3호	5~9층	29	206,905,500	359,190,450	-	566,100,000	10,000,000	18,365,000	56,610,000	56,610,000	56,610,000	56,610,000	56,610,000	56,610,000	198,135,000
	406동 2,3호	10~19층	64	207,932,950	360,967,050	-	568,900,000	10,000,000	18,445,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199,115,000
	407동 2,3호	20층 이상	58	210,016,300	364,583,700	-	574,600,000	10,000,000	18,730,000	57,460,000	57,460,000	57,460,000	57,460,000	57,460,000	57,460,000	201,110,000
102A	404동 1,2호	2층	6	221,798,060	384,007,940	38,394,320	644,200,000	10,000,000	22,210,000	64,420,000	64,420,000	64,420,000	64,420,000	64,420,000	64,420,000	225,470,000
	405동 1,2호	3층	6	228,959,500	396,406,500	39,634,000	665,000,000	10,000,000	23,25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232,750,000
	406동 3,4호	4층	6	236,086,510	408,745,700	40,867,720	685,700,000	10,000,000	24,285,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239,995,000
	405동 1,2호	5~9층	30	238,496,610	412,918,470	41,284,920	697,700,000	10,000,000	24,635,000	69,270,000	69,270,000	69,270,000	69,270,000	69,270,000	69,270,000	242,445,000
	406동 3,4호	10~19층	60	239,667,230	414,945,210	41,487,560	696,100,000	10,000,000	24,805,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243,635,000
	20층 이상	80	242,077,330	419,117,910	41,904,760	703,100,000	10,000,000	25,155,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246,085,000
102B	404동 3호	2층	1	217,700,890	376,914,030	37,685,080	632,300,000	10,000,000	21,615,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221,305,000
		3층	1	224,724,610	389,074,470	38,900,920	652,700,000	10,000,000	22,635,000	65,270,000	65,270,000	65,270,000	65,270,000	65,270,000	65,270,000	228,445,000
		4층	1	231,748,330	401,234,910	40,116,760	673,100,000	10,000,000	23,665,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235,585,000
		5~9층	5	234,089,570	405,288,390	40,522,040	679,900,000	10,000,000	23,995,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237,965,000
		10~19층	10	236,260,190	407,315,130	40,724,680	683,300,000	10,000,000	24,165,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239,155,000
		20층 이상	10	237,601,430	411,368,610	41,129,960	690,100,000	10,000,000	24,505,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241,535,000
116	401동 3,4호	2층	4	254,540,990	440,696,730	44,062,280	739,300,000	10,000,000	26,965,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258,755,000
	402동 3,4호	3층	4	262,769,760	454,943,520	45,486,720	763,200,000	10,000,000	28,160,000	76,320,000	76,320,000	76,320,000	76,320,000	76,320,000	76,320,000	267,120,000
		4층	4	270,964,100	469,130,700	46,905,200	787,000,000	10,000,000	29,35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75,450,000
		5~9층	20	273,518,500	473,899,500	47,382,000	795,000,000	10,000,000	2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78,250,000
		10~19층	20	275,061,270	476,224,730	47,614,440	798,900,000	10,000,000	29,945,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279,615,000
		20층 이상	24	277,815,670	480,993,090	48,091,240	806,900,000	10,000,000	30,345,000	80,690,000	80,690,000	80,690,000	80,690,000	80,690,000	80,690,000	282,415,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하나은행	780-910024-686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자정일	
84A	14,000,000	1,400,000	12,600,000	
84B	14,000,000	1,400,000	12,600,000	
102A	17,000,000	1,700,000	15,300,000	
102B	17,000,000	1,700,000	15,300,000	
116	20,000,000	2,000,000	18,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하나은행	780-910024-69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3 청약신청 자격 등

3 청약신청 자격 등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년무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양자도직접입고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재건축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사실을 승낙한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에게 제출함)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한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주택 청약신청자의 부동신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있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신특례를 사용하여 정형화하려는 것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유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유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조목의 특별금급 입주가 및 입주자주조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금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신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신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금급 입주가 조 선정될 때는 본인 직위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유 사실은 정정될 수 있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가 조 선정된 경우 당청이 취소조 및 부적정 당첨조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신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형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 및 처분 조건으로 특별금급에 당첨된 분이 금급을 충족의 소액인 이전 지점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일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금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0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의3를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청약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당첨자는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자는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월(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유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예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버서버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간주거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초기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양육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간주거(장래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주택부지재정착)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연차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금액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연차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양육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연차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금액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연차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유형별 특별공급 대상자

구분	대상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생 지체제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보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비무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도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할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없이 현재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분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2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생아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일바공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입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장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담양차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 ①지역 → ②추첨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전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장기입기간 점수

당첨자 선정방법	배우자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50% 적용)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대출 가임기간 전까지는 전체 가임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수로 계산하며, 정수상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

■ 배우자의 입주자대출 가임기간 정수의 배우자의 입주자대출 가임기간 전 정수 합산 시 17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3개월까지만 인정

■ 계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을 순취학인원 및 발급받은 입주자대출 가임기간 정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취학인원 및 배우자의 당첨자상 학원비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취학인원 발표: 청약율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취학인원 발표 > 청약통장 가입확인을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자상 학원비 발급: 청약율 > 청약율 > 순취학인원 발표 > APIT당첨자상 조회

■ 입주자지급고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취학인원 발표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취학인원 발급이 불허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입주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정수 필요

■ ③청약통장 가임기간: 가임기간은 순취학인원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대출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자측에서 종환자측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사업주체 및 현황

주책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6-101-0004800호	321,267,895,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 사 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삼성유미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늘천	(합)피이피그린
감리금액	4,522,510,300	814,500,325	824,654,795	323,649,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성상개발 주식회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음대로 8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60111-5093643	110111-6740008

■ **사이버 견본주택** :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 홈페이지(<https://cheonan-iparkcity3-4.com>)

■ 전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유의사항	위치

※ 본 이주자민지공고는 분야계약내의 이주로 구성되며, 협약자는 본 이주자민지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 본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접수사무소접수는 전일 및 인쇄 과업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제만 중사접수 및 마감사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 자세한 공사 범의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전정 13단지 : 중년 전임직 사복구 부대용 394-2
3단지 : 3. 전정인사 사복구 부대용 394-20

	4면지 : 양면 전의지 수록부 부48쪽 364~20	전면부속 : 양면 전의지 책방을 정제의 17/14
--	------------------------------	-----------------------------